

의안번호	2208113
의 퇴 인	박덕흠 의원
회 답 일	2025.03.04.
추계번호	25C09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의3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제1항)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항)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의무규정
		(제5항)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3조의3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질환교원의 공정한 교직수행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

- 부산, 경기, 충북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¹⁾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경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교육청 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건수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43조의3제2항은 위원회 정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시·도교육청 규칙에 따라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10인 미만으로 운영 중인 일부 지자체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3조의3제4항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접수되거나 교육감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5항은 조사 결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참고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 이상을 제외한 개정안의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규칙 등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수와 개최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개최 횟수 증가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
 -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 총액임
 - 그러나, 안 제43조의3제5항에 따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판단이 교육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예측하기 어려움
 - － 안 제43조의3제5항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개최 횟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안 제43조의제2항에 따른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분기별로 1회씩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5년간 총 3억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 [참고자료 3] 분기별 심의 가정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지역	현원	내부위원	위촉위원
서울	13	4	9
부산	15	5	10
대구	10	4	6
인천	10	3	7
광주	11	4	7
대전	9	3	7
울산	10	4	6
세종	7	1	8
경기	9	4	5
강원	10	2	8
충북	7	3	4
충남	10	3	7
전북	12	5	7
전남	9	3	7
경북	9	3	6
경남	13	5	8
제주	9	4	5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임

2. 경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구성원임

3. 위촉위원은 교육청별 구체사항에 차이는 있으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원단체 추천인, 학부 모단체 대표 등이 해당함

자료: 각 시·도교육청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서울	—	2	5	7
부산	—	1	—	1
대구	—	—	—	0
인천	2	2	9	13
광주	—	—	—	0
대전	—	—	—	0
울산	—	1	2	3
세종	—	—	—	0
경기	—	2	3	5
강원	—	—	—	0
충북	—	1	6	7
충남	—	3	3	6
전북	2	3	3	8
전남	—	—	1	1
경북	—	2	8	10
경남	—	—	1	1
제주	—	3	—	3
합계	4	20	41	65

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심의 건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3] 분기별 심의 가정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안 제43조의제2항에 따른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로 1회씩 심의가 추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추계
 - 각 시·도 교육청의 위촉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추가재정소요로 보고 추계
 - 기존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여타 비용은 기존 운영비로 충당 가능함을 가정
- 재정소요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위촉위원 수에 위원회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추계
 - (위촉위원 수) 안 제43조의3제2항은 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자료 1]의 현재 위원 구성 현황을 참조하여 위촉위원 수를 결정함
 - －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내부위원 수 중위값은 3명²⁾이므로 위촉위원 수는 7명으로 함
 - (위원회 참석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은 시·도 교육청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1회 15만원으로 하며, 추계기간 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시·도 교육청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 수당은 1일당 기본료로 10만원을 지급하되, 회의가 2시간 이상일 경우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횟수) 가정에 따라 기존에 비해 연 4회 심의가 더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로 심의를 추가 시행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표] 분기별 심의 가정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추가재정소요	7,140	7,140	7,140	7,140	7,140	35,700

주: 1. 현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이 10인을 초과하는 지역이 존재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위원이
수가 감소한다면 추계 결과가 변동할 수 있음

2. 연 4회 심의가 더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해 추계한 값으로, 실제 위원회 개최 횟수 추이에 따라 추계 결과가 변동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각 시·도교육청 규칙은 일반적으로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